

KOCIC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

우편번호: 05051 / 주소 :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86 (자양동,세경빌딩4층)

선관위 간사 백치순 / 담당 채희진 / 전화:(02)454-5114 전송:(02)454-5359 www.cctv.or.kr

문서번호 : 선관위 제21-006호

시행일자 : 2021. 2. 7.

수 신 : 조합원사 대표이사(친전)

참 조 :

제 목 :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제8대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 공고 안내

선 람		지 시	
접 일자	. .	결 재	
수 번호		공 람	
처리부서			
담 당 자			

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임원선거규정 제19조에 따라 우리조합 제8대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를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입후보자 현황

기호	입후보자 성명	상호 및 직위
단독 입후보	이 상 우	(주)아이엔아이 대표이사

나. 입후보자 공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조합홈페이지(www.cctv.or.kr) 알람마당-공지사항 게시자료 참조. 끝.

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
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 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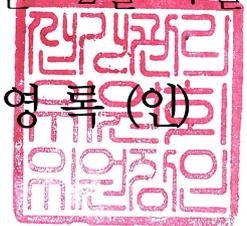
공고 제2021-2호

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제8대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 공고

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임원선거규정 제19조에 따라 한국감시기기
공업협동조합 제8대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7일

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 영 복 (인)



1. 입후보자 현황

기호	입후보자 성명	상호 및 직위
단독 입후보	이 상 우	(주)아이엔아이 대표이사

2. 선거운동기간

가. 선거운동기간 : 2021. 2. 7(일) 입후보자 공고이후 ~
2021. 2. 17(수) 22:00까지

나. 선거운동의 제한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,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, 및 조합
정관, 임원선거규정에 따름

3. 선거권자

가. 선거권자의 자격 :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대의원

-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,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.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함.
- 대의원은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선출직으로 선출 당시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음.

나. 선거권 행사

- 선거권은 당해 대의원이 출석하여 행사한다. 다만,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- * 이 경우 대리인은 당해 대의원사의 임·직원으로서 유효한 위임장 (별지 제1호 서식)을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대의원은 1개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4. 선거방법

임원선거규정에 따른 무기명 비밀투표로 함.

총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

5. 선거일시 및 장소

- 2021. 2. 18(목) 11:00 (대의원 정기총회)
- 밀리토피아 호텔 포트리스 홀
(주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 ☎031-727-9370)

6. 기타사항

- 본 선거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,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.
- 선거관련 사항 등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-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: 전무이사 백치순 02-454-5114

끝.

한국감시기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

제8대 이사장 선거 관련 선거권자 자격사항 등 안내

□現 이사장 임기 : 2021. 2. 18 限

*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 및 조합정관 제45조 임원의 임기 : 4년

□선거권자(대의원)

○ 자격

- 이사장의 임기종료일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조합의 조합원일 것

○ 선거권 행사

- 대의원은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. 다만,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(유효한 위임장을 미리 제출)이 출석하여 선거권 행사 가능
 - * 대리인은 당해 조합원사의 임·직원일 것(정관 제33조의2)
- 대의원은 1개의 선거권을 행사

○ 선거권 행사 정지(정관 제33조 제4항)

-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무 이행시까지 선거권 행사 정지 가능(선거일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)
 1. 회비를 1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
 2. 규약에서 정한 대출금,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료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 후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